



전산정보과 운영규정

[제목개정 2014.11. 1, 2021. 1. 1]

제정일	1982. 6. 1
개정일	2021. 1. 1
개정차수	10차
담당부서	전산정보과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서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부속 정보지원센터 전산정보과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 1, 2021. 1. 1)

제 2조 (삭제 2021. 1. 1)

제 3조 (업무) 전산정보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1. 1, 2021. 1. 1)

1. 대학정보화 계획수립 및 시행
 2.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 (개정 2019. 1. 1)
 3. 데이터베이스 운영관리
 4. 본교 정보자원 관리
 5. 본교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관리
 6. 통합정보통신망 및 서버 운영관리 (개정 2019. 1. 1)
 7. 대학정보화 교육지원
 8. 전산보안 업무
 9. 기타 전산정보과 설치목적 달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1. 1, 2021. 1. 1)
- [전문개정 2008. 3. 1]

제 2 장 조 직 [장개정 2014. 5. 1]

제 4조 (조직) ① 전산정보과는 과장 1명과 약간 명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 1)

② (삭제 2021. 1. 1)

③ 정보지원센터장은 전산정보과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4.11. 1, 2021. 1. 1)

④ 모든 전산 시설은 정보지원센터장의 책임 하에 관리한다. (개정 2014.11. 1, 2021. 1. 1)

[전문개정 2014. 5. 1]

제 5조 ~ 제 9조 (조삭제 2014. 5. 1)

제 3 장 운 영 [장신설 2014. 5. 1]

제10조 (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 ① 통합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설치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통제 구역으로 설정하고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②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장비의 파손·분실·화재·도난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개정 2019. 1. 1)

[제목개정 2019. 1. 1]

제11조 (통합정보시스템의 보안) 사용권한이 없는 자의 통합정보시스템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한다. (개정 2019. 1. 1)

[제목개정 2019. 1. 1]

제12조 (전산자료의 보관·관리) 시스템운영자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생성되는 전산자료에 대한 백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제 4 장 운영위원회 [장신설 2014. 5. 1]

제13조 (목적) 전산정보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전산정보과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사업에 관련한 제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 1, 2021. 1. 1)

제14조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보지원센터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4.11. 1, 2021. 1. 1)

②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각 학부(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8명 내외의 조교수 이상 교수로 구성하고, 정보지원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1. 1, 2021. 1. 1)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총장이 정한다.

제15조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의결한다.

1. 전산정보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개정 2014.11. 1, 2021. 1. 1)

2. 전산정보과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1. 1, 2021. 1. 1)

3. 전산정보과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평가 (개정 2014.11. 1, 2021. 1. 1)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회의를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평가 및 개선 [장신설 2014. 5. 1]

제17조 (평가 및 개선) 정보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반영한다.

제18조 (평가 주기) 평가 주기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9조 (평가 결과)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서비스 개선과 전산정보과 업무 및 정책수립에 반영한다. (개정 2014.11. 1, 2021. 1. 1)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